

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 변경약정서

(파생상품거래용)

(이하 "고객"이라 한다)과 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한다)간에 _____년 _____월 _____일에 체결한 "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 약정서"의 제4조에 따라 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를 변경하므로, 본 "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 변경약정서"를 다음과 같이 체결합니다. 변경 후 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는 본 변경약정서의 체결일로부터 유효합니다.

제1조 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의 변경

변경 전	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 (통화 및 금액)
변경 후	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 (통화 및 금액)

본인은 본 자료를 (수령)하고 자료의 (내용)에 대하여 (설명)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.

작성일자 _____년 _____월 _____일

※ 이 약정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고객	은행
고객명 : _____ (인/서명)	주식회사 하나은행 (부지점 인)
주 소 : _____	주 소 : _____

